

법제상별위원회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 사단법인 대한수중·핀수영협회(이하 '본 협회'라 칭함) 정관 제31조(각종위원회) 대한체육회 법제상별위원회 규정 제12조(법제 상별위원회 설치의무)에 의거, 본 협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며, 법제 상별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함)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협회 정관 제3조에 의하여 수중스포츠인의 공적에 대한 표창이나 비위사실에 대해 징계함으로써, 수중스포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운영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본협회, 시도지부 및 연맹체의 임직원
2. 핀수영 등록선수
3. 등록 스쿠버강사 및 회원
4. 기타 협회 이사회에서 결의한 단체 및 개인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1. 표창에 관한 사항
2. 징계에 관한 사항
3. 정부 및 대한체육회,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

제5조(조직)

1.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.
2. 위원장은 정관 제10조의 임원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며, 위원은 이사또는 전문인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
3. 본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직원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.

제6조(운영)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
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,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2.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3.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4.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때는,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는 차기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
5. 위원이라 할지라도 계류중인 표창 또는 징계의 심의 대상자가 되거나,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는 당해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

제2장 표창

제7조(표창의 종류)

본 협회의 표창종류는 정부 및 대한체육회, 기타 유관기관의 표창과 자체표창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다.

<외부기관 표창>

- 체육훈장, 포장
- 대통령 표창
- 국무총리 표창
- 문화관광부장관 표창
- 대한체육회장 표창
- 기타 기관장 표창

<자체표창>

- 공로상
- 지도상
- 경기상
- 심판상
- 기타일반표창

제8조(표창대상자)

1. 위원회는 다음의 해당자 중에서 표창대상자를 심의 결정한다.

- (1) 각종 국제핀수영경기대회 입상자 및 지도자
- (2) 핀수영 한국신기록 수립자, 우수선수 및 지도자
- (3) 핀수영 보급 발전에 공헌한 자
- (4) 본협회 조직 확대에 공헌한 인사
- (5) 국내외 수중촬영대회 우수작품 작성자
- (6) 스킨스쿠버 다이빙 보급 발전에 공헌한 강사
- (7) 본협회 회원 가입에 공헌함 임원 및 강사
- (8) 수중정화 등 사회활동에 공헌한 강사 회원 기타 수중스포츠인
- (9) 본협회 및 시도지부 사무국 우수직원
- (10) 기타위원회에서 특별히 결정한 대상자

2. 다만, 각종 국내수중경기대회 입상자 및 입상단체 시상은 해당되지 않는다.

제9조(절차)

1. 자체표창은 각 위원회 및 시,도지부장의 추천에 의해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한다.

2.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할 수 있다.

제10조(표창시기) 표창의 시기는 정기표창과 임시표창으로 나눈다.

1. 정기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.

- (1)본 회 창립기념일
- (2)본 회 '수중인의 밤' 또는 대의원총회

2. 임시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.

- (1)수중스포츠 발전에 공적이 있는자
- (2)제8조 표창대상자에 한해 특별히 공적이 있는자.

제11조(구비서류)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추천자 명단과 공적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장 징 계

제12조(증거우선의 원칙)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하여는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.

제13조(징계의 종류) 제13조(징계종류)①징계의 종류에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징계를 받는 자의 신분에 따라 달리 구분한다.

② 선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.

가. 중징계 : 출전정지, 자격정지, 제명

나. 경징계 : 견책

③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.

가. 중징계 : 출전정지, 자격정지, 해임, 제명

나. 경징계 : 견책, 감봉

④ 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.

가. 중징계 : 출전정지, 강등, 자격정지, 제명

나. 경징계 : 견책

⑤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

가. 중징계 : 직무정지, 자격정지, 해임, 제명

나. 경징계 : 견책

⑥ 대회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하여는 대회중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세칙에 따라 징계한다.

⑦ 제1항의 징계이외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위원회에서 징계정도를 별도로 정할수 있으며,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는 본 협회의 사무국 처무규정 제6장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4조(징계대상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.

1. 비위사실이 있다고 신고되거나 이첩된 경우.
2. 위원회가 비위사실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경우
3. 각종 대회중 경기규칙 위반자 및 경기장 질서 문란자
4. 선수보호위원회로부터 징계요구를 이송받은 경우.
5. CMAS KOREA에서 요청한 강사 징계
6. 본협회 및 시도지부를 고의적으로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수중스포츠인 전체의 인화와 명예를 해친자
7.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심의 결정한자.

제15조(출석요구) ① 위원회가 징계 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징계 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 요구서를 징계 혐의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징계 혐의자가 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.

④ 징계 혐의자가 해외체류,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, 여행,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접수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.

⑤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.

⑥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.

제16조(심문과 진술권) 1.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.

2.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,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.

3.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17조(제척 및 기피) 징계혐의자의 친족이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사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

제18조(징계의 양정)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,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, 인품, 공적,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.

제19조(징계의 통보) 1. 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2. 징계통보서에는 징계이유와 내용은 물론 징계재심사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0조(재심사 요구) 1. 위원회의 징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.

2. 재심사 요구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3. 재심사요구를 받은 위원회는 재심사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정 제16조 내지 제19조의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

제21조(이의신청) 제21조(이의신청) ① 위원회가 재심사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징계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이의신청은 본 협회가 재심사하여 징계 의결한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④ 체육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제·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6조,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 결정내용을 즉시 문서로써 징계를 심사한 본 협회의 장 및 징계혐의자와 그 소속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·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⑤ 이의신청에 대한 체육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,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.

제22조(징계의 의결) ① 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의 재심사 요구가 없을 경우 본 협회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,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.

② 위원회가 재심사한 징계는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여야 하며, 징계혐의자가 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후에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의결 확정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체육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한다.

④본 협회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즉시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의결사항은 이를 즉시 문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3조 (징계의 감경 및 해제) ①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, 사면 또는 복권할 수 있다.

1. 「상훈법」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
2.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
3. 대한체육회장 표창 받은 공적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, 사면, 복권할 수 없다.

1.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(金品授受) 비위
2. 성폭력, 선수 폭력

③ 체육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대한 감경, 사면, 해제, 복권은 체육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④ 사면이라 함은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.

제24조(징계의 보고) 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사항은 물론 본 회 이사회가 의결한 징계와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본규정은 1993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개정하여 시행한다.(2006. 1. 10)
3.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개정하여 시행한다.(2006. 12. 22)
4.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개정하여 시행한다.(2010. 6. 1)
5.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개정하여 시행한다.(2015. 1. 16)

● 대회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

제1조(근거 및 목적) 본 세칙은 본회 법제 상벌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함) 규정 제13조 6항에 의거 제정 하며, 대회중 경기장 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체육풍토를 조성하여 선진질서조기에 정착하고 전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 세칙은 본회 시·도지부 및 그 단체의 산하 모든 조직(이하 "해당단체"라 한다)에서 주관하는 대회중 발생하는 경기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 적용한다.

제3조(징계대상) 1. 단체 임·직원(심판포함)

2. 시·도지부 및 해당단체의 임·직원(심판포함)

3. 등록단체(팀)

4. 등록단체의 임원 및 선수

제4조(징계절차) 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기장질서 문란행위자는 사건발생 직후부터 법제위원회의 징계확정시까지 해당대회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해당단체는 사건발생후 즉시 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후, 48시간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5일이내에 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다.

③ 위원회는 징계대상자 및 관련 해당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④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단체는 본인 및 소속단체에 징계내용을 직접송달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 통고 하여야 한다.

⑤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징계처분 단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⑥ 재심청구에 대한 의결은 해당단체 이사회에서 하며, 재심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결정한다.

제5조(징계해제 및 경감)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선의 정이 뚜렷하고 체육발전에 기여할 자세가 인정될 경우는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자격정지의 경우는 징계기간의 1/2이상이 경과되어야 하며 무기한 자격정지의 경우는 징계 후 3년이상 경과되어야 해제 및 경감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6조(제재조치) 해당단체가 징계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해당 단체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7조(유형별 징계기준) 유형별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1. 본 세칙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시행한다.(2006. 1. 10)

유형별 징계기준

1. 심판 및 임원

가. 심판배정상 불공정 행위 : 자격정지 1년이상

나.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: 자격정지 1년이하

다. 불공정한 심판행위 : 무기한 자격정지

(고의적 부정행위)

2. 선수

가. 심판 판정 불복 폭언 : 출전정지 6개월 이상

나. 심판에 대한 폭행 : 출전정지 2년 이상

다. 부정 출전 선수 : 출전정지 6월 이하

라. 선수상호간 폭행

- 주동자 : 출전정지 1년 이상

- 가담자 : 출전정지 6월 이하

3. 지도자

가. 심판 판정 불복(경기지연)폭언 : 출전정지 3개월 이상

나. 심판 및 선수등에 대한 폭행 : 출전정지 2년 이상

다.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자 : 자격정지 1년 이상

라.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

물의를 야기한 자(교사) : 자격정지 1년 이상

마. 물의 야기를 방조한 자 : 자격정지 6월 이하

바.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

- 주동자 : 무기한 자격정지

- 가담자 : 출전정지 2년 이상

4. 단체(팀)

가. 심판불복 경기방해 : 출전정지 6월 이하

나. 경기장 폭행 난동 : 출전정지 3년 이상

5.상기 사유가 경합되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명할 수 있다.

다만, 이 경우에는 해당단체 상벌규정에 따른다.